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4. 12. 7)

1. 심사 경과

가. 2004. 11. 29: 사천시장제출

나. 2004. 12. 2: 총무위원회 회부(의안번호 제62호)

다. 2004. 12. 7: 제9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 요지(총무과장 김영고)

가. 제안 이유

- 1) 공무원노조 출범에 대비하여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총무국장의 분장사무에 반영하고,
- 2)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이 「여유기구제」 시행과 연계, 연장 가능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05. 6. 30까지로 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1) 공무원단체 지원업무 전담기구 신설에 따른 총무국장 분장사무 조정
 - 시정행사,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사항
→ 「공무원 임용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
- 2)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의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조정
 - 「주민자치과」 존속기한 : 2004. 6. 30 → 2005. 6. 30 까지

다. 관계 법령

-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인력보강지침(행자부 04. 11. 3),
- 읍면동 기능전환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행자부 04. 6. 29)

3. 검토 보고 요지(전문위원 김태주)

-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인력보강지침(행자부 04. 11. 3)과 읍면동 기능전환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행자부 04. 6. 29)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 개정하는 내용 중
 - 제6조 제2항의 총무국장 분장 사무를 개정 하는 것은 공무원 노조법의 연내 입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조의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소관 부서를 공무원인사, 후생, 복지를 수행하는 총무과로 지정함에 따라 총무국장의 분장사무를 “시정행사, 직원후생복에 관한사항”을 “공무원임용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 하는 것이며
 - 조례 제493호(01. 12. 19) 부칙 제2항을 개정하는 것은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이 여유기구제시행과 연계하여 연장 가능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05. 6. 30일까지로 조정 하는 것임
- 본 개정안은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음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 의견 : 없음